

최고정책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가 사회공익기여와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주요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최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국가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조명·전기설비 및 에너지를 포함한 전기관련 기술 등에 대한 자문

② 학회 운영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

제3조(구성 및 위촉) 위원회는 회장단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정수는 직선 평의원수의 10% 이내로 한다.

제4조(회의 및 의견청취 기능)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,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
2.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